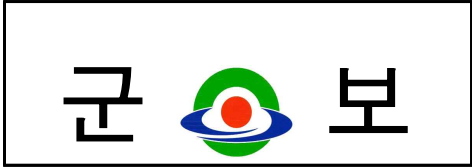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39호 2024. 6. 20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례

○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예천군 조례 제2626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64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6월 20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626호

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9호 및 제13호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외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.

제6조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근골격계질환 예방(재활)프로그램 지원

13.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- 예천군청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 외의 목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단체보험 가입비의 지원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의 업무 능력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.

◇주요내용

가.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은 별도의 예산목으로 운영(안 제6조)

- 제9호 및 제13호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외의 예산항목(공공운영비 등)으로도 편성할 수 있다.

나. 후생복지사업에 근골격계질환 건강프로그램과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사항을 명시(안 제6조제12호, 제13호)

- 제12호 : 근골격계질환 예방(재활)프로그램 지원
- 제13호 :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